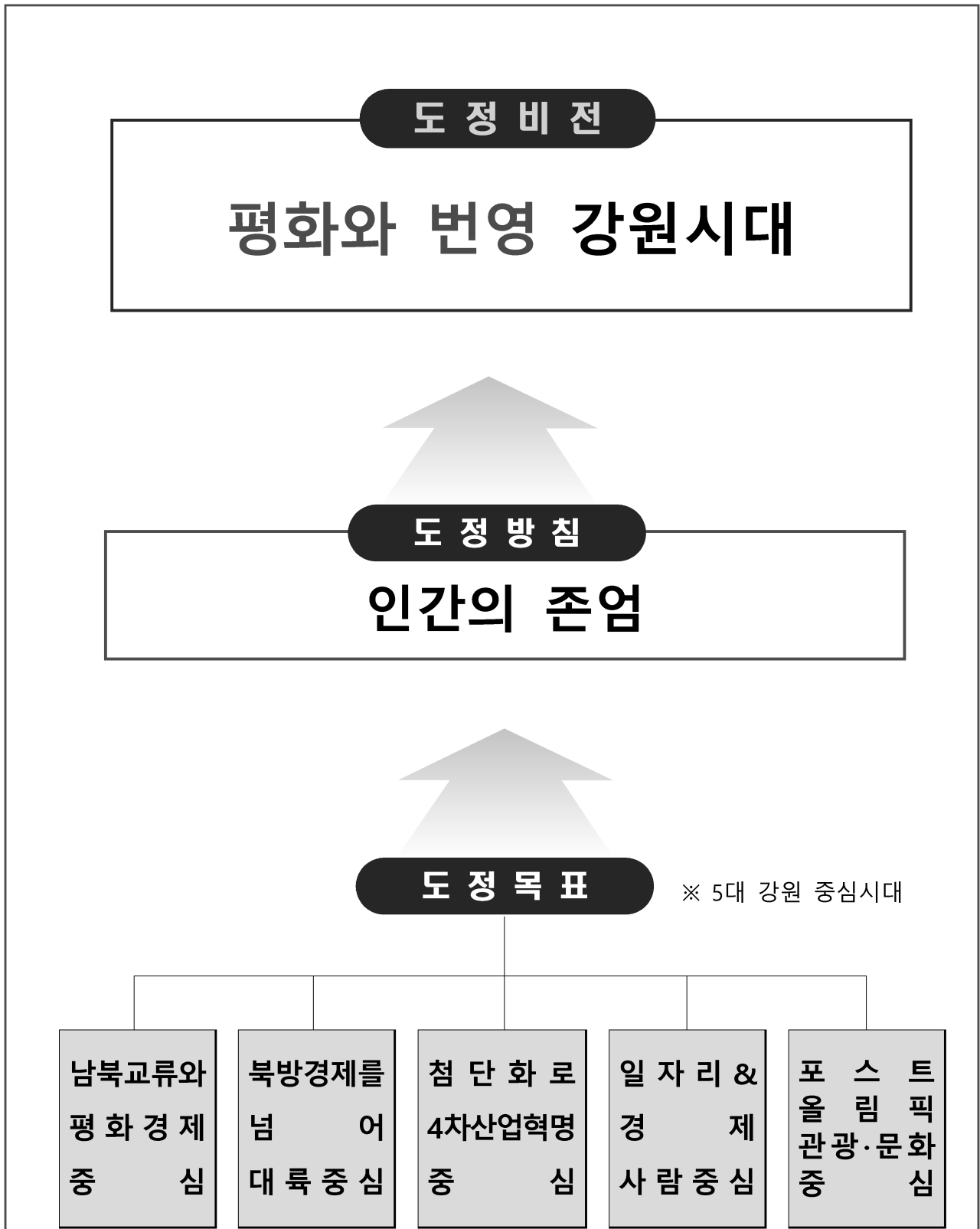


I . 재정운영 방향

1.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
2. 2020년 재정운영 방향
3. 2020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

1.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



2020년도 도정방향

■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 내실 있는 성과 도출

- 주요 프로젝트(공약 등)의 방향성 정립에서 정책성과의 구체화 전환
- 국내외 정세·경기변동 대응, 법·제도 등 인프라 자생력·추진력 강화
-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민선 7기 도정방향

- 올림픽 성공개최 + 평화경제 활성화 등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강원경제의 성장판』 및 『강원 경제영토』 확대
- 강원 도민이 중심인, 강하고, 원대한 강원시대, 「평화와 번영», 「성장과 복지」가 함께 공존하는 신강원(국제강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주력

■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2020 도정 핵심목표와 추진전략

도정 핵심목표 ⇨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 평화경제공동체 실현

- 핵심 달성지표 : 고용율 63%, 1인당 GRDP 32,236천 원, 수출 25억불

핵심 추진전략 ⇨ 5대 분야 21 추진과제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신관광·문화 가치창출,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자체시스템 완벽 준비
- 평화지역 안정, 금강산관광 재개 등 평화경제 가시화
- 대형SOC사업 조기착공, 생활SOC 인프라 확충
-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추진체계 대대적 혁신
- 영화제·음악제 등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 포스트올림픽 확산(기념재단 활성화,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등)
- 관광융합 항공운송산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안정화
- 신규 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 등 해외본부 역량강화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추진
- 미세먼지, 수질, ASF 등 사회위험(RISK) 대응체계 강화
-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人災)없는 생활안전 확산

2. 2020년 재정운영 방향

재정여건

- 도세는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 자주재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 확대 정책으로 증가 예상, 의존수입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 예상
 - 지방세 33.9%, 지방교부세 △2.7%, 국고보조금 6.0% 등
- 세출수요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신산업 육성, 일자리, 평화지역, 남북교류, 저출산 등 핵심 현안사업 추진, 복지수요 등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금과 계속사업 추진 등으로 대폭 증가
 - 경상예산 1.8%, 사업예산 15.2% 등

중점 편성방향

- 민선 7기 3년차,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평화지역 활성화 등 역점사업 집중 투자
-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중앙정부 지원 복지사업, 고용안정 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분 전액 반영
- 사회보장협의,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출자·출연 및 행사·축제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분야별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①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 전기산업 284, 수소산업 344
- 신재생 60 24,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 85

②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15,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28,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80
-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 101,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25

③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

- 양양·원주 공항 활성화 36,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24
- 수소충전소 설치 60, 도시숲 조성 34

④ 사회안전망 강화

-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243, 강원일자리 공제 154,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80
- 장애인 일자리 55억, 어르신일자리 686

⑤ 문화강원 가치창출

- 수출시장 다변화 33,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7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5
-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22

⑥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 도 이미지 제고 80, 생활soc 체육진흥시설지원 156, 체육진흥시설 지원 232
- 강원 FC 67,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205, 공공도서관 건립 83

⑦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 아동수당 548, 가정양육수당 273, 장애인 연금 330, 기초연금 4,995
- 참전 명예수당 44, 노인돌봄서비스 132

⑧ 기타 법정 필수경비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53, 농촌 중심지 활성화 249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80, 연안정비 48

3. 2020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

1 기준경비 관련

1 지방의원 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페널티 적용방안 마련 (별표 1)

-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페널티를 적용하되, 제재수단*은 자치단체별 자율적 운영

*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현 행	개 정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③ <신 설>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③ <u>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재수단*</u> 을 적용 *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2 지방의원 국외여비 추가 편성기준 명확화 (별표 1)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되 국가공식행사 등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추가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 자치단체별로 추가편성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발생함에 추가편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u>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u>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u>의원국외여비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u>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③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 관리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를 참고*하여 별도한도 산정 시 (지방의원 수 × 500만원)를 추가 반영
 -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다만,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로 관리

현 행	개 정
<p>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 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p>	<p>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 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u>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u>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p>
<p>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5. <신 설></p>	<p>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5. 의원정책개발비</p> <p>① <u>경비성격</u>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p> <p>- <u>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u></p> <p>※ <u>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u> 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p> <p>② <u>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p> <p>※ <u>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 × 500만원)</u></p>

현 행			개 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일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일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장협의체 부담금 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09. 의원정책개발비 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10. 의장협의체 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④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 정비 (별표 2)

-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기관장 및 보조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좌기관 지급 여부 불분명
- 조례 및 규칙에 명시된 보좌기관에 대해서도 당해직급의 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

현 행	개 정
【별표 2】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② 기준액 10) 신설	【별표 2】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② 기준액 10) <u>보좌기관 중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를 보유한 자에 한해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u>

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 대상 정비 (별표 2)

- 4급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하여 편성 근거 명시

※ 공식 조직인 합의제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2】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시·도 : 3급 이상(다만, 본청의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및 4급 사업소장*(소장서장) 포함 가능)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	【별표 2】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좌동 - 시·도 : 3급 이상(다만, 본청의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및 4급 사업소장*(소장서장) · <u>합의제 행정기관의 장</u> 포함 가능)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

6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민간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고려 근거 마련 (별표 3)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사항

현 행	개 정
【별표 3】 1. 일반원칙 ▶ <신 설>	【별표 3】 1. 일반원칙 ▶ <u>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u>

7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기준 단서조항 개선 (별표 3)

- 전년대비 보조금 총한도액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하나,
-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에서 ‘전년도’의 기준을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해석·적용할 여지가 있어 비교 대상의 기준년도를 함께 병기하여 해석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u>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u>)을 초과하지 못함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제외 (별표 3)

- 재정분권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 증가되는 자체 보조사업(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총액한도 적용 제외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p>【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p> <p>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p>【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p> <p>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p>▶ <u>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u></p>

9] 통장·이장 기본수당 상한액 조정 (별표 4)

-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위해 기본수당을 기존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현실화

현 행	개 정
<p>【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p> <p>② 기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 (월2회) 	<p>【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p> <p>② 기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 (월2회)

2 세출 예산과목

1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 범위 확대 (별표 11)

- 저소득층에 금전인 보상금 외에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혼란 발생 가능
- 지급 상황에 따라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이미 다수 자치단체에서 물품 지원 편성 중

현 행		개 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1	일반보상금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2 기타 세출 예산과목 정비 (별표 11)

- 편성목 및 통계목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1	일반보상금	301	일반보전금
	09. 행사실비 보상금		09. 행사실비 지원금
802	반환금기타	802	반환금기타
	03. 과오납금 등		03. 기타 반환금 등

1 추경 등 예산 변경시 성과계획서 변경 작성 명문화 【별표 13】

○ 추경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하도록 명시

※ 국가의 경우,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도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명시(국가재정법 제8조)

현 행	개 정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1. 예산편성</p> <p>□ 예산의 성과관리</p> <p>○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p> <p>-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10호)」참조</p> <p>*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p> <p>* <신 설></p> <p>* <신 설></p>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1. 예산편성</p> <p>□ 예산의 성과관리</p> <p>○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p> <p>-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10호)」참조</p> <p>*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p> <p>* <u>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u></p> <p>* <u>또한,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u></p>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 【별표 10】

□ ‘재정분권’으로 균특 포괄보조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다만, 지방소비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 필요)

○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예산편성 방식 변경 필요

- 동일한 내용의 세부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 국고보조(균특·기타회계) 형식에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과 자체사업은 분리 편성

※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세부사업(국가 기준 ‘내역사업’) 내에는 반드시 전환된 부기사업(국가 기준 ‘세부내역사업’)만을 포함

- e-호조 시스템 상 속성 표시 신설 ⇨ 자치단체 전환사업에 속성 체크

현 행	개 정
< 신 설 >	<p>□ 자치단체 전환 사업 예산편성 현황 분석을 위한 사업 구조화</p> <p>① 기존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이하 ‘균특·기타회계’라 함) 편성·운영사업 중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 소관으로 전환된 사업(이하 ‘전환사업’이라 함)은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전환사업’ 임을 표기</p> <p>②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내 포함되는 부기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편성</p> <p>※ 세부사업 내, 전환사업이 아닌 타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p> <p>③ 사업명은 ‘19년도 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단, ‘20년 신규사업은 제외)</p> <p>④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전환사업’ 속성 정보 표기(신설)</p>

③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행

- 자치단체 예산편성 단계에서 협의·조정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시행 전 협의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시

현 행	개 정
<p>V. 예산편성 참고자료</p> <p>1. 예산운용 실무</p> <p>1. 예산 일반</p> <p>□ 예산의 원칙</p> <p>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p>
<p>1. 예산운용 실무</p> <p>3. 예산편성</p> <p>□ 예산의 편성절차</p> <p> 나. 예산편성 운영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 : 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 (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 성과계획서 :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세입예산요구 : 회계별로 세입예산 요구서를 작성
- 세출예산요구 :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
- 보조금부담조서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 하여 제출

< 신 설 >

다.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기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이행 사항 등 관련자료 첨부 (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완료 공문 등)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예)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예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

구 분	주요내용			
협의요청 사업명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요청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4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준수 사항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정리추경) 시에도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도록 명시
 - ※ 연말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 예방
- 자치단체가 재난 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현 행	개 정
<p>V. 예산편성 참고자료 (’19년 지침 기준 p.309~329)</p> <p>1. 예산운용 실무</p> <p>5. 예비비</p> <p>나.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u> ○ <u>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 필요</u>

5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근거 신설

○ 지방예산 편성·집행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p>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p> <p>④ < 신 설 ></p>	<p>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 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6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개선 [별표 9]

○ 분야 명칭을 예산편성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선

현 행	개 정																																										
<p>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부문</th> <th>명 칭</th> </tr> </thead> <tbody> <tr> <td>070</td> <td></td> <td>환경보호(6)</td> </tr> <tr> <td>110</td> <td></td> <td>산업,중소기업(6)</td> </tr> <tr> <td>120</td> <td></td> <td>수송 및 교통(5)</td> </tr> </tbody> </table> <p>분야부문별 설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부문</th> <th>부문에 해당하는 업무</th> </tr> </thead> <tbody> <tr> <td>050</td> <td>교육</td> <td></td> </tr> <tr> <td></td> <td>053 평생·직업 교육</td> <td>포함) 평생교육 및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 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td> </tr> </tbody> </table>	분야	부문	명 칭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120		수송 및 교통(5)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050	교육			053 평생·직업 교육	포함) 평생교육 및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 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p>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부문</th> <th>명 칭</th> </tr> </thead> <tbody> <tr> <td>070</td> <td></td> <td>환경(6)</td> </tr> <tr> <td>110</td> <td></td> <td>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td> </tr> <tr> <td>120</td> <td></td> <td>교통 및 물류(5)</td> </tr> </tbody> </table> <p>분야부문별 설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부문</th> <th>부문에 해당하는 업무</th> </tr> </thead> <tbody> <tr> <td>050</td> <td>교육</td> <td></td> </tr> <tr> <td></td> <td>053 평생·직업 교육</td> <td>포함) 평생교육 및 장애인 교육, 국제교육, 인적자원 개발, 국제교육진흥원 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td> </tr> </tbody> </table>	분야	부문	명 칭	070		환경(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120		교통 및 물류(5)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050	교육			053 평생·직업 교육	포함) 평생교육 및 장애인 교육, 국제교육, 인적자원 개발, 국제교육진흥원 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분야	부문	명 칭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120		수송 및 교통(5)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050	교육																																										
	053 평생·직업 교육	포함) 평생교육 및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 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분야	부문	명 칭																																									
070		환경(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120		교통 및 물류(5)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050	교육																																										
	053 평생·직업 교육	포함) 평생교육 및 장애인 교육, 국제교육, 인적자원 개발, 국제교육진흥원 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4 기금분야

1 재난·재해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제한 완화

- 인건비, 시설비 등 예산 전용 제한 목*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경직적 운영 초래

* 인건비, 시설비·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 재난·재해 기금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특성,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한 범위를 확대 필요

현 행	개 정
<p>□ 기금운용계획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u>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적은 변경 불가</u> <p>○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p> <p>※ (신 설)</p>	<p>□ 기금운용계획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은 축소변경 불가(증액변경은 가능) ※ <u>업무추진비는 증액변경 불가(축소 변경은 가능)</u> ※ <u>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이와 관계없이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가능</u> <p>○ (좌 동)</p> <p>※ <u>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변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제한 없음</u></p>

② 기금 조성액을 활용한 적극적 사업 추진

- 타 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외에 기금 조성액 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에 내용 명시

현 행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기본방향 가. <u>기금운용 원칙</u> ○ <u>기금에 조성된 원금을 활용하여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편성</u>

③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 정책사업비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결 불요
 - 2회 이상 정책사업비 변경 시, 정책사업비의 20%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현 행	개 정
<신 설>	<p>※ <u>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u></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예) A기금 '19년 정책사업 예산 10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변경) 1.5억원 증액 : 15% 증가 → <u>의결 불요</u> · (2차 변경) 1억원 증액 : 10억원 대비 2.5억 증액, 25% 증가 → <u>의결 필요</u> </div>

[기타①] 기금 보조금 심의 기능 수행

- 기금 보조금 심의 기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

현 행	개 정
<p><u>【목차 제외】</u></p>	<p>【참고 : 기금 제도 개요】</p> <p>4. 기금의 관리·운용</p> <p>가. 기금 관리 및 운용</p> <p>□ 기금의 집행</p> <p>○ <u>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를 준용하여 관리 철저</u></p> <p>- <u>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 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u></p> <p>※ 예) <u>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u></p> <p>- <u>단, 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함</u></p>